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③ 구 강도범죄 양형기준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은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준강도, 준특수강도(형법 제335조), 강도상해 · 치상(형법 제337조), 강도살인 · 치사(형법 제338조), 상습강도 등(형법 제341조), 특가법상 상습강도 등(특가법 제5조의4 제3항), 누범강도 등(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강도상해 재범(특가법 제5조의5)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가중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택 가능, 이하 같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 금융기관 강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총기 사용(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 · 협박 ○ 생계형 범죄 ○ 소극 가담 ○ 흉기 단순 휴대(2유형)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가(누범)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행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2	특수강도	3년 - 6년	4년 - 7년	6년 - 10년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가(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 · 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 금융기관 강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중한 상해 ○ 총기 사용(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 · 협박 ○ 생계형 범죄 ○ 소극 가담 ○ 흉기 단순 휴대(2유형)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가(누범)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도치사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5년
2	강도살인	11년 - 13년	12년 - 15년, 무기	무기 이상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미필적 살인의 고의(2유형)	○ 계획적 살인 범행(2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체손괴(2유형) ○ 잔혹한 범행수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 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 인은 제외)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사체유기(2유형) ○ 특수강도 범행
	행위자 /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절도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상습 · 누범강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 · 누범강도	5년 - 8년	6년 - 10년	8년 - 12년

-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가법 제5조의5)에 해당되어 특가(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가(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금융기관 강도 ○ 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강도) ○ 중한 상해(누범강도) ○ 총기 사용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특수강도 범행
	행위자 /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특가(누범)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도)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일반강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단순 강도	형법 제333조
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 협박)	형법 제335조

나. 제2유형(특수강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야간 주거 등 침입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5조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5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동)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	특강법 제3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일반강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도/준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37조

나. 제2유형(특수강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37조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강도치사)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형법 제338조

나. 제2유형(강도살인)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형법 제338조

4. 상습 · 누범강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41조
상습으로 강도(미수범 포함),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미수범 포함), 제340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37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5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 타인의 강압이나 해악 고지 등에 의해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 ▶ 다만,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 · 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 ·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 5인 이상 공동 범행

-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마.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

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바. 경미한 폭행 · 협박

- 폭행 · 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가중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중한 상해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계획적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